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554 |
|----------|------|

2026. 3. 27.(금)
제307회 임시회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2026년 3월 4일 제출된 것으로,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II. 주요내용

- 1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(신설): 천원행복기금

III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1)
- 「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 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IV. 검토 내용

1. 기금 조성규모

-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기금 조성규모를 살펴보면, 기존 17개 기금²⁾에 천원행복기금이 신설되어 총 18개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2조 5,146억 원이며, 수입 4,750억 원 대비 지출 4,723억 원으로 27억 원의 순증이 발생함에 따라 2026년도말 조성액은 2조 5,173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【전체 기금조성규모】

(단위: 백만 원)

| 2025년도말 조성액(A) |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³⁾ | | | 2026년도말 조성액(A+B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수 입 | 지 출 | 증감(B) | | |
| 2,514,588 | 475,050 | 472,311 | 2,738 | 2,517,326 | |

- 2026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1조 1,659억 원으로, 기정액 1조 1,639억 원 대비 20억 원(0.2%)이 증가하였음.

【전체 기금운용계획】

(단위: 백만 원, %)

| 구 분 | 수 입 | 지 출 | 전체기금 대비 비중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8개 기금 | 1,165,902 | 1,165,902 | 100.0 |
| (천원행복기금) | (2,050) | (2,050) | (0.2) |

2) 기존 17개 기금(남북교류협력기금, 통합관리기금, 지방채상환기금, 지역개발기금, 고향사랑기금, 재난관리기금, 재해구호기금, 농어촌진흥기금, 중소기업육성기금, 에너지사업기금, 약취관리기금,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, 사회복지기금, 식품진흥기금, 양성평등기금,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)

3) 기금조성 규모는 기금운영계획의 수입 중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와 지출 중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하여 외부에서 실제로 유입되는 실질 재원만을 기준으로 작성

2. 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

- 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,
 - 수입의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전입금이 1,67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(1.2%) 증가하였음.
 - 지출의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비용자성사업비가 1,071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,900백만 원 증가하였고, 예치금은 2,7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(0.7%) 증가하였음.

【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】

(단위: 백만 원, %)

| 수입계획 | | | | | 지출계획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|
| 항목 | 기정액 | 제1차 변경액 | 증감 | 증감률 | 항목 | 기정액 | 제1차 변경액 | 증감 | 증감률 |
| 합 계 | 1,163,852 | 1,165,902 | 2,050 | 0.2 | 합 계 | 1,163,852 | 1,165,902 | 2,050 | 0.2 |
| 전 입 금 | 165,825 | 167,825 | 2,000 | 1.2 | 비 용 자 성 사 업 비 | 107,117 | 107,146 | 29 | 0.0 |
| 보 조 금 | 119 | 119 | - | - | 응 자 성 사 업 비 | 46,620 | 46,620 | - | - |
| 차 입 금 | 96,495 | 96,495 | - | - | 인 력 운 영 비 | - | - | - | - |
| 용자금회수 (이자포함) | 36,650 | 36,650 | - | - | 기 본 경 비 | - | - | - | - |
| 예 탁 금 원 금 회 수 | 280,896 | 280,896 | - | - | 예 탁 금 | 419,150 | 419,150 | - | - |
| 예치금회수 | 409,957 | 409,957 | - | - | 예 치 금 | 272,420 | 274,441 | 2,021 | 0.7 |
| 예 수 금 | 93,150 | 93,150 | - | - | 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 | 264,106 | 264,106 | - | - |
| 이 자 수 입 | 75,300 | 75,300 | - | - |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| 54,419 | 54,419 | - | - |
| 기 타 수 입 | 5,461 | 5,511 | 50 | 0.9 | 기 타 지 출 | 20 | 20 | - | - |

* 자료: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안

3. 천원행복기금 편성현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4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⁴⁾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로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.
- 천원행복기금은 지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해당 상임위(행안위)에서 「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위원회안으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 기금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본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.
- 천원행복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은 천원행복정책⁵⁾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사업의 기획·홍보와 기금 지원 사업의 발굴 및 그 밖에 천원행복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기금 수입으로 편성하고,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.
-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,
 - 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, 기타수입(기부금 수입*) 5천만 원이며,
 - * 경기일보에서 천원행복기금 지정 기탁 “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부금”

4)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⁴⁾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5)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(정의) “천원행복정책”이란 시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시민이 천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⁵⁾이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.

- 주요 지출계획은 기금의 설치 목적인 천원행복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천원캠핑 운영 사업비 2,900만 원을 편성하고, 남은 자금 20억 2,100만 원은 예치하는 사항으로,
- “천원캠핑 운영” 사업은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인천대공원 등 4개소 내의 캠핑장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정 및 한부모가족이 2026년 5월부터 8주간 주말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천원에 이용⁶⁾할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운영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임.

【천원행복기금 상세내역】

【민생기획관 / 민생담당관】

(단위: 백만 원, %)

| 기금명 | 자금운용계획 | | | | 변경사유 (신규 편성) | 비고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
| | 기정액 | 제1차 변경액 | 증감액 | 증감률 | | |
| 천원행복 기금 | - | 2,050 | 2,050 | 순증 | 【수 입】 ◦ (전입금) 20억 원 편성 - 일반회계 전입금 ◦ (기타수입) 50백만 원 편성 - 경기일보의 천원행복기금 지정 기탁 (기부금) | 변경 계획안 p. 16 |
| | | | | | 【지 출】 ◦ (비용자성사업비) 29백만 원 편성 - 천원정책사업 “천원캠핑 운영” 사업 추진 ◦ (예치금) 20억 21백만 원 편성 - 사업 추진 외 여유자금 예치 | 변경 계획안 p. 17 |

* 자료: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

6) “천원캠핑” 시설현황 및 1,000원으로 예약 후 캠핑(1박)요금 차액 지원 내역

(단위: 천원)

| 시설명 | 전체 면수 | 시설종류 | 지정 면수 | 주말요금 (1면/풀셋팅) | 금 액 (2개월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
| 합계 | | | | | 29,000 | 8주 |
| 인천대공원 | 121면 | 그늘막캐빈텐트 | 5 | 137 | 6,000 | |
| 솔찬공원 | 62면 | 카라반 | 5 | 199 | 8,000 | |
| 청라해변공원 | 65면 | 카라반(풀패키지) | 3 | 299 | 8,000 | |
| 씨사이드파크 | 72면 | 카라반 | 5 | 159 | 7,000 | |

V. 검토 의견

- 금번 변경계획안은 관련 조례 시행에 따라 신규 기금을 반영한 것으로, 절차적·법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, 시민체감형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점에서 기금 설치의 정책적 필요성 또한 인정됨.
- 다만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3조⁷⁾ 및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방향⁸⁾에 따르면,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, 수입의 대부분이 일반·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폐지 후 일반·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임.
- 이에 따라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은 향후 재원의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, 이자수입 외 기부금 등 다른 재원의 조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,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천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면서, 이 중 900억원을 민간 기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나, 현재까지의 실적은 5천만원에 불과한 상황으로, 향후 기부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계획, 연차별 세부 목표 마련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
- 아울러, 기금 설치의 실질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발굴 및 확대 전략,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 향후 기금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.

7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3조(기금의 설치 제한)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.

8)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2025.8. 행정안전부)